

의 결



ACRC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3 - 877호

의 안 명 「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」

대상기관 행정안전부, 공직유관단체(506개)

의 결 일 2023. 11. 6.

주 문

「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관리체계 개선방안」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506개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각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11월 6일

위 원 장 김 홍 일

위 원 김 태 규

위 원 박 종 민

위 원 강 길 연

위 원 최 정 목

위 원 송 현 주

위 원 홍 세 욱

위 원 홍 봉 주

위 원 최 진 영

위 원 신 대 희

<별 지>

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

2023. 11.



국민권익위원회



❏ 목 차 ❏

I. 추진 배경 및 경과	1
II. 제도 현황	2
III. 문제점	4
1. 동일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이 상이	4
2. 조달청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자원 낭비	4
3.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미흡	5
4.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노력 미흡	6
IV. 개선방안	8
1. 동일 물품에 대한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 정립	8
2.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강화	8
3. 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	8
4. [정책제안] 불용물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	9
V. 조치사항	10
[붙임] 관련 법령	11



I.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보유·사용 중인 물품의 통일적·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물품관리 법령 및 지침 운영
- 그러나, 공직유관단체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품관리 법령 및 지침이 부재*하고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 부적정하게 관리
 - *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사규를 통해 개별적으로 물품관리 기준 마련
-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비해 물품의 사용 연한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빈번한 교체수요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초래
- 또,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불용물품을 적기에 처분(매각, 양여, 폐기 등)하지 않고 장기 방치하는 부적정 관리 사례 발생

- ○○공직유관단체는 '15. 12월에 4~5년 사용한 냉난방기를 불용 처리하는 등 부적정하게 물품관리('19. 8월 언론기사)
- ○○군청은 사용하지 않는 1,700만 원 상당의 고가장비를 약 2년 동안 별다른 조치(매각, 폐기 등) 없이 방치('22. 11월 언론기사)

⇒ 이에,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물품관리 체계 정비를 통한 물품 관리 행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

□ 추진 경과

- 제도 운영 실태조사 : '23. 2월~7월
-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기관 의견조치 : ~'23. 9월
- 위원회 상정 및 권고 : '23. 11월

< 실태조사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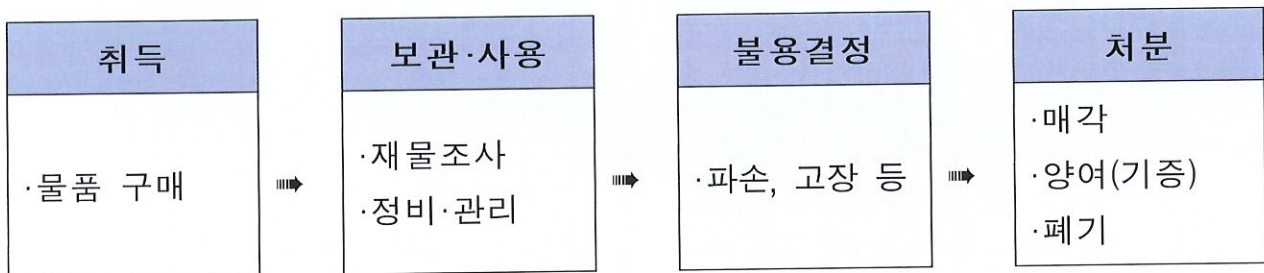
- 대상기관 : 중앙행정기관 32개, 지자체 243개(광역 17개, 기초 226개), 공직유관단체(180개)*
- * 공직유관단체 선정 기준 : 공기업, 지방 공사 및 공단 등 기관 유형별로 임의 선정
- 조사기간 및 방법 : '23. 2월~7월, 서면·방문조사

II. 제도 현황

□ 물품관리 개요

- (의의) 물품관리는 행정목적 상 필요한 물품의 취득·사용부터 불용·처분까지의 관리행위를 의미

<물품관리 업무 절차>



※ 물품관리 업무절차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유관단체 모두 동일

- (관련법령) 중앙행정기관은 「물품관리법」, 지자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통해 물품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

※ 「물품관리법」은 기획재정부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

- 공직유관단체의 경우,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없이 각 기관별 사규를 통해 물품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

□ 물품 내용연수

- 「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조달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연수를 물품별로 규정하여 고시

*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 :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-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를 공통 적용하고, 공직유관단체는 사규를 통해 일부 기관만 적용

<참고 : 주요 물품 내용연수(조달청 고시)>

품명	내용연수(~'21년)		내용연수('22년~)
· 컴퓨터, 태블릿컴퓨터	5년	⇒	작동
· 노트북컴퓨터	6년		
· 텔레비전	9년		
· 소파	8년		
· 키폰전화기	8년		9년
· 책상	8년		10년
· 의자	8~9년		9년
· 책장	8년		

□ 물품의 불용

-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,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장래에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경우, 고장·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불용

□ 불용물품의 처분

- 불용물품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정도, 수요 유무 등에 따라 매각, 양여(기증), 폐기의 방법으로 처분

Ⅲ. 문제점

1 동일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이 상이

-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공통 적용하고 있으나,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사규로 별도 규정

<기관별 물품 내용연수 기준 현황>

중앙행정기관	지자체	공직유관단체
조달청 고시		기관별 사규로 별도 규정

- 이로 인해,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일 물품임에도 적용되는 내용연수 기준이 공직유관단체마다 상이한 문제 발생

<권익위 실태조사 : 공직유관단체 내용연수 적용기준 현황>

기관 수	조달청 고시 준용	법인세법* 준용	자체 기준**
180개 (100%)	97개 (54%)	45개 (25%)	38개 (21%)

* 법인세법은 보유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한 회계상 잔존가치 평가가 목적이므로 실제 사용연한 기준을 정하는 물품관리법과 목적 상이(법인세법 상 내용연수는 5년)

** (자체기준 예시) ○○공직유관단체는 물품관리 사규에 일반 비품(책상, 의자 등) 내용연수를 일괄적으로 6년 적용하도록 규정

2 조달청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자원 낭비

- 법인세법 또는 조달청 고시보다 완화된 자체기준 적용 시, 물품의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자주 도래하여 자원 낭비 발생
- 최근 4년 간 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기 불용 처리된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취득가는 약 55억 원

<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공직유관단체 조기 불용 현황>

조사기관 수	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조기 불용 기관 수	조기 불용품 취득가
180개	52개(28.9%)	55억 원

※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, '19년부터 '22년까지의 불용품품 합계 기준

<권익위 실태조사 : 부적정한 조기 불용 사례>

구분	물 품	조달청 내용연수	실제 사용기간	조기 불용품 취득가('19~'22)
A 기관	냉장고	9년	5년	17억 8천만 원
	소파	8년	5년	
	책상	9년	5년	
	노트북	6년	5년	
B 기관	의자	10년	5년	2억 3천만 원
	책상	9년	5년	
	냉장고	9년	5년	
C 기관	의자	10년	6년	2억 5천만 원
	노트북	6년	5년	

3

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미흡

-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물품관리 지침*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규정

* 중앙행정기관 지침은 조달청이, 지방자치단체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관리

※ 조달청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「물품관리 평가」에 '내용연수 대비 연장사용률'을 반영

- 그러나, 대부분의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, 내용연수 경과 즉시 불용결정하는 사례 빈번

<권익위 실태조사 : 기관별 내용연수 대비 연장사용 사례>

중앙행정기관	지자체	공직유관단체
• (A기관) PC 200여대 <u>3~6년 연장사용</u>	• (A구) PC, 노트북 180여대 <u>2~7년 연장사용</u>	• (A단체) PC, 노트북 180여대 <u>내용연수 경과 즉시 불용</u>
• (B기관) 노트북 20여대를 <u>2~4년 연장사용</u>	• (B구) 노트북 30여대를 <u>2~4년 연장사용</u>	• (B단체) 노트북 100여대 <u>내용연수 경과 즉시 불용</u>

□ 불용물품 미처분, 장기 방치로 자원 낭비

- 불용물품을 장기 보관할 경우, 해당 물품의 사용 및 교환가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어 적기에 처분하는 것이 중요

※ 장기 보관 시 매각 또는 기증할 수 있는 물품의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가 훼손되어 불필요한 폐기 증가의 요인으로도 작용 가능

- 그러나, 다수의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불용결정한 물품의 장기(6개월 이상) 미처분 방치 사례가 발생

<권익위 실태조사 : 기관별 불용물품 미처분 현황>

기관구분	기관 수	계	3개월 이상 6개월 이내	6개월 이상
중앙행정기관	32개	1개 (3.1%)	-	1개
광역 지자체	16개	5개 (31.3%)	1개	4개
기초 지자체	218개	64개 (29.4%)	15개	49개
공직유관단체	170개	12개 (7.1%)	3개	9개

※ '22년에 불용결정하고 '23. 2월까지 처분하지 않은 물품 기준, 실태조사 대상기관 중 '22년도에 불용결정한 물품이 없는 경우 기관 수에서 제외

□ 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부재

- 지자체 물품관리 법령 및 지침, 공직유관단체 물품관리 사규는 불용결정 요건과 처분 방법만 규정하고 처분 기한 규정은 부재

※ 조달청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시행하는 「물품관리 평가」에 '불용물품 처분 적시성'을 반영

- 처분 기한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불용물품의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에 맞게 신속히 처분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적정 관리 사례 초래

— <권익위 실태조사 :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사례 > —

• <1년 이상 방치>

- (A시) '22. 3월 이전에 불용 결정한 의자, 소파, 탁자 등 100여개 물품 미처분 방치
- (B시) '22. 3월 이전에 불용 결정한 모니터, 선반, 의자, 탁자, 텔레비전, 소파 등 180여개 물품 미처분 방치

• <6개월 이상 방치>

- (A단체) '22. 7월 이전에 불용 결정한 의자, 프린터, 세탁기 등 30여개 물품 미처분 방치

※ '22년에 불용결정 하고 '23. 2월까지 처분하지 않은 물품 기준

IV. 개선방안

1

동일 물품에 대한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 정립

- 공직유관단체도 지자체와 같이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공통 적용*하여 빈번한 물품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방지

※ 단, 기관 또는 업무상 특수성으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자체기준으로 관리 가능

*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, 법인세법과 별개로 각 물품의 실제 사용 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임

⇒ 공직유관단체 : 물품관리 관련 사규 또는 지침 등 개정

2

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강화

- 공직유관단체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같이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오래쓰는 문화 정착

⇒ 공직유관단체 : 물품관리 관련 사규 또는 지침 등 개정

3

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

-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정*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** 이내 처분 의무화 규정 마련

* (예시) 유찰 등으로 인한 매각 지연, 다른 규정에 의거 불용품 처분 시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처분기간의 예외로 인정

**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평가 시, 불용결정일로부터 160일 초과 시 최저점 부여,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도 의무 처분 기간이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필요

⇒ 행정안전부 :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개정

⇒ 공직유관단체 : 물품관리 관련 사규 또는 지침 등 개정

4

[정책제안] 불용물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

- 사용가치가 있는 불용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 중인 사례를 참고하여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노력 필요

⇒ 불용물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

— < 불용물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사례 > —

- (광주광역시) 불용결정한 PC, 모니터 중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을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고 1년 간 무상 A/S 제공
- (서울 구로구) 불용결정한 PC, 모니터 중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, 2년 간 무상 A/S 제공
- (국민권익위원회) 불용결정한 PC, 모니터, 의자, 탁자 중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지원

※ 조달청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시행하는 「물품관리 평가」에 '불용물품의 양여 및 취약계층 지원율'을 반영

<권역위 실태조사 : 기관별 불용물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현황>

구분	중앙행정기관	광역자치단체	기초자치단체	공직유관단체
전체기관 수	32개	16개	218개	170개
불용물품 활용 취약계층 지원 기관	16개 (50%)	5개 (31.2%)	50개 (22.9%)	29개 (17%)

※ '22년 불용결정된 물품 기준, '22년도에 불용결정된 물품이 없는 경우 기관 수에서 제외

V. 조치사항

□ 대상기관 : 행정안전부, 공직유관단체

□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

구분	조치사항	대상기관	조치기한
① 동일 물품에 대한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 정립	•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준용 ⇒ <u>물품관리 관련 사규 또는 지침 등 개정</u>	공직유관단체	'24. 3. 31.
②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강화	•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 ⇒ <u>물품관리 관련 사규 또는 지침 등 개정</u>	공직유관단체	
③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	•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규정 마련 ⇒ <u>(행정안전부)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</u> ⇒ <u>(공직유관단체) ⇒ 물품관리 관련 사규 또는 지침 등 개정</u>	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	

1. 물품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 물품(物品)의 취득·보관·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6조의2(물품의 내용연수)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5조(불용의 결정 등)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(이하 “불용품”이라 한다)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9조(불용 결정의 기준 등)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(不用)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2. 물품관리법 시행규칙

제51조(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) ①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
2.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
3. 원장비(原裝備)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
4.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5.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
6.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7.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

②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전환, 양여, 매각,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
2. 변질·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

3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·처분의 기본원칙)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
2.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
3.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
4.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

제58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(定數)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제75조(불용의 결정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(不用)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.

4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58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, 정수의 책정 및 배정, 내용기간(耐用期間),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제77조(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)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. 다만,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
1.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
2.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
3.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
4.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
5. 원장비(原裝備)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
6.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7.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
8.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9.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

정 본 입 니 다 .

2023. 11. 7.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
